

어선청년임대사업 임대용어선 모집공고

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는 연안어업 활성화 및 기존·예비 어업인 간 상생협력을 위한 어선청년임대사업 임대용어선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19일
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

1. 사업 개요

- (목적) 기존 어업인의 연안어선을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과의 매칭을 통하여 임차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연안어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- (사업내용) 기존어업인 어선(허가 포함)을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청년 어업인에게 어선을 임대하며, 월 임차료의 50%를 공단에서 지원
 - 임차료 : 임대차에 따른 월 임차료는 50%는 공단이, 50%는 임차인이 납부하며 공단 납부분은 6개월 또는 연마다 납부, 임차인은 월납으로 함
 - 보증금 : 임차료의 납부를 공단이 보증함에 따라 별도의 보증금 없음
 - 어선의 상태보전 :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이 임대어선을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, 어선보험료는 임차인이 부담

2. 모집 개요

- (모집기간) 상시모집
- (모집어선) 전국 연안복합·연안통발·연안자망 어선
- (접수처)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,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어업관리실
- (제출서류) ① 신청서(붙임 1 서식)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(붙임 2 서식)
 - * 신청서와 함께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,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와 선체 사진 어선명 및 선체 전체가 나오는 전·후·좌·우 사진 각 1장 제출

3. 임대용어선 선정 및 임대차 계약 체결 등

- (모집시기) 상시
- (선정방법) 청년 어업희망인이 어선의 상태 및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
 - 어선주가 제출한 1차 희망가격을 기초로 공단이 어선 감정평가 또는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어선임대차 적정가격을 산정 후 어선주에게 제시
 - 어선주는 공단이 제시한 적정 임대차가격을 기초로 최종 희망가격 제출
 - 공단이 임대용어선 모집 현황과 어선별 선주 희망가격을 청년어업인에게 제시하고, 청년어업인이 계약대상 어선 선정 및 해당 어선 선주에게 공단이 개별 통지
 - 청년어업인이 선정한 어선에 대하여 선주와 임대차가격 협의
 - 임대차가격 협의가 완료된 어선에 대하여 임대용 어선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며, 임대차 계약 체결
 - 영어자금(수협), 국고보조사업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검토 후 어선임대차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필수 기재 요망
- (계약체결) 공단에서 제공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체결하되, 임대인(어선주)과 임차인(청년어업인), 공단이 모두 합의한 경우 특약 추가 가능
 - 임차료의 50%는 임차인이, 50%는 공단이 지급
 - * 임차인의 임차료 납부는 월납으로, 공단의 임차료 납부는 6개월 마다 납부를 기본으로 하며, 필요시 납부의 방법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
 - 계약서는 총 3부를 작성하여 임대인, 임차인, 공단이 각각 보유
 - 어선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면 임대인은 어선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,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를 하고, 어선보험 등에 가입
 - 임대차계약 후 어업허가지위승계를 추진하여 어선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허가권은 임차인이 승계받으며, 계약기간 중 어업허가 갱신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임대인 명의로 허가를 변경하여 갱신
 -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공단은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하여 사업자격을 박탈하고 임차료를 회수할 수 있음

4. 문 의 처

-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어업관리실(☎ 051-718-2403, 2404)

【붙임 1】 어선청년임대사업 신청서

어선청년임대사업 신청서(어선 선주용)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
	주소	(휴대폰 :)

어선 내용	어선명칭	어업허가
	어선번호	총톤수(허가톤수)
	선질	선적항

희망하는 어선임대료의 액수	매월 금	원정(₩)
영어자금(수협) 및 국고보조금 자원 여부	영어자금, 국고보조금 수령	해당사항 없음

어선청년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어선 모집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신청서(본 서식) 1부 2.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 각 1부 3.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4. 선체 사진(선명 및 선체 전체가 나오는 전·후·좌·우 사진 각 1장)
-------------	--

처리절차



